새만금개발청설립준비단 구성 및운영에 관한 규정

[시행 2013.5.3] [국무총리훈령 제603호, 2013.5.3, 제정]

제1조(목적) 이 규정은 「새만금사업 추진 및 지원에 관한 특별법」 제34조에 따른 새만금개발청의 설립을 효율적으로 지원하기 위하여 필요한 기구 등의 구성과 운영에 관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.

제2조(설치) 새만금개발청(이하 “ 개발청 ” 이라 한다)의 설립을 효율적으로 추진하기 위하여 국토교통부에 새만금개발청설립준비단(이하 “ 준비단 ” 이라 한다)을 둔다.

제3조(기능) 준비단은 다음 각 호의 업무를 수행한다.

1. 개발청의 설립 · 운영에 필요한 예산 확보 및 청사시설의 마련 등 개청 준비
2. 개발청 직원의 선발에 대한 지원
3. 개발청이 이관 받을 업무에 대한 부처 협의
4. 그 밖에 개발청의 설립 준비와 관련하여 필요한 사항

제4조(구성) ① 준비단은 단장 1명과 25명 이내의 단원으로 구성한다.

② 단장은 국토교통부 국토정책관이 되고, 단원은 국토교통부 소속 공무원, 관계 행정기관에서 파견된 공무원과 관련 기관 · 단체에서 파견된 직원이 된다.

③ 준비단에 기획총괄반과 조직운영반을 두되, 반장은 단원 중에서 단장이 지명하는 자가 된다.

④ 기획총괄반과 조직운영반의 소관업무에 관한 사항은 단장이 정한다.

제5조(단장의 직무) ① 단장은 국토교통부장관의 명을 받아 준비단의 운영 및 업무에 관한 사항을 총괄한다.

② 단장이 부득이한 사유로 직무를 수행할 수 없을 때에는 반장 중에서 단장이 지명하는 자가 그 직무를 대행한다.

제6조(관계기관 등에의 협조요청) 단장은 준비단의 업무수행을 위하여 필요한 때에는 전문지식과 경험이 있는 관계 공무원 또는 관련 전문가의 의견을 듣거나, 관련 기관 · 단체 등에 대하여 필요한 자료 및 의견 제출 등 협조를 요청할 수 있다.

제7조(조사 및 연구 의뢰) 단장은 준비단의 업무에 관한 사항을 검토하기 위하여 필요한 때에는 관련 전문가 또는 관련 기관 · 단체 등에 조사 또는 연구를 의뢰할 수 있다.

제8조(공무원의 파견 등) 단장은 준비단의 원활한 업무 수행을 위하여 필요한 때에는 관계 행정기관과 관련 기관 · 단체에 소속 공무원 또는 직원의 파견을 요청할 수 있다.

제9조(포상추천 요청) 단장은 준비단에 파견된 단원 중 준비단에 기여한 공적이 크거나 직무를 성실히 수행한 자에 대하여는 포상추천을 해당 소속기관의 장에게 요청할 수 있다.

제10조(수당 등) ① 준비단에 파견된 공무원 또는 기관 · 단체 직원의 보수는 해당 소속 기관 · 단체에서 지급한다.
② 준비단의 단원과 준비단의 자문 등에 응한 관련 전문가 등에 대하여 예산의 범위에서 수당과 여비 그 밖에 필요한 경비를 지급할 수 있다.

제11조(운영세칙) 이 규정에서 정한 사항 외에 준비단의 구성 및 운영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단장이 따로 정한다.